

제 호

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

1. 기관·단체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소재지: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 직인